

## 잔류허용기준 없는 물질에 대한 기준설정의 필요성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이 인 호

우리나라에서 양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나 관련 산업의 관계자들은 계란이나 닭고기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다량 사용되고 있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in) 등 항균성물질의 잔류분제가 KBS-TV와 같은 공영방송이나 4대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사태가 진정되어 원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홍역을 치러야 하는지 잘 아는 일일 것이다.

이미 본인이 본지를 통해서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치료용 항콕시듬제인 톨트라주릴(Toltrazuril) 성분과 같은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 되고 있으면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

정되지 않아 정규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양계농가 특히, 육계농가와 중추(中雛) 사육농장에서는 14~16일에 해당되는 휴약 기간이 무시된 채,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계농가에서 맹장 콕시듬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2~3주령인 것은 육계농가들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이때부터 톨트라주릴을 휴약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양계업을 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계실지 의문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서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톨트라주릴에 대한 기준시험법의 확립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서 식품공전에 톨트라주릴 잔류허용한계치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콕시듐증이 발병하면 톨트라주릴과 같은 치료용 항콕시듐제를 일령에 관계없이 사용해서 사태를 먼저 진정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직시하고서 법의 제정에 임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양계농가들의 현장에서 호흡기질병의

클리닝 및 치료용 제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아몰린과 린코마이신의 경우에도 CODEX,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치가 설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축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CODEX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인 식품공전에 의해 적·부 판정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앓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동물용의약품의 무잔류 원칙을 고수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 EU의 압력에

굴복하여 모든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해서 잔류허용한계치(MRLs)의 설정을 완료하여 2006년(平成 18년) 5월부터 시행(Positive Lists)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잔류검사항목은 업계와 현장의 사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현실에 부합되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로, 현행 일본의 행정조치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은 우리에게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은 물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제기준, 구미 선진각국의 기준 등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잠정적인 기준설정을 확대하고 잠정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일률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s)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계농가들도 비록 현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장래에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수의 사처방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신중사용으로 잔류문제를 비롯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39개 사료공장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HACCP를 선진 축산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의 HACCP의 적용(현재는 미실시)을 통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복제 제품이 난립하고 있는 치료용 항콕시듐제인 톨트라주릴과 예방용 항

콕시듐제인 살리노마이신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잔류허용한계치를 설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만약 소비지단체 등에서 콕시듐증 치료제를 사용한 농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의뢰라도 해서 잔류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는 무잔류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양계농가로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단호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EU에서 보듯이 2006년 1월 1일부터 사료용 항생물질을 전면 금지시키자 치료용 항생물질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축산현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 잔류문제의 해결은 이전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동물약품은 특성상 미국, EU 등 각국에서는 품목허가 등 기술검토 시 독성 및 잔류성 평가를 통하여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잔류허용기준 설정(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과 동물약품 품목관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동물약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최근 식품안전청과 같은 통합기구 신설이 논의되고 현 시점에서 품목허가 등 동물약품을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거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동물약품 센터(FDA/CVM)와 같이 통합기구 내 동물약품 품목 관리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함께 담당하는 전문조직 신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